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72 제출 연월일: 2020년 9월 일

제출자: 강 서 구 청 장

1. 의결 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욱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마.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바. 의견 청취, 공청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사.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아. 조사·연구 의뢰,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4. 참고 사항

- 가. 관계 법령
 - 1) 「지속가능발전법」 제10조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0조
-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 다. 합의: 해당 기관 없음
- 라. 기타
 - 1)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감수 결과 반영
 - 2) 입법예고(2020. 7. 22. ~ 8. 11.)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욱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유엔 70차 총회에서 채택한 17개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도시가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본문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한경우에는 변경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 이행계획도 동시에 수립·변경할 수 있다.

-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 ① 구청장은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속가 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 ②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2.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경제·사회·환경 등 구정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 3. 주요 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소장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
 - 2. 강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워 2명
 -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속가능발 전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사람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개최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 가능발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두며,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운영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사전 검토
- 2.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 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5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6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토론회·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 제17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

- 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그 밖의 사항) ① 그 밖에 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회의록 작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착·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②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기본계획, 이행계획, 지속가능발 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연구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0조(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구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 용역비용
- 지속가능성 평가 용역비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 업무추진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예상 소요 비용: 68,000천원
 - 기본계획·이행계획(5년 주기) 수립 용역비용: 약 50,000천원
 - 지속가능성 평가 용역비용(2년 주기): 약 10,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매년): 약 5,000천원
 - 업무추진비(매년): 연 3,000천원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과장 김정걸

(담당: 행정8급 고건우 / ☎ 2600-6125)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욱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의견 청취, 공청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조사·연구 의뢰,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계획 수립, 지표 마련 및 평가·보고, 위원회 구성, 의견 수렵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 가 번 호	2020 - 27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기획예산과	통보(조기	네)일	2020. 8. 10.		10.	
관 련 조 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서울강서026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고건우	전화번호	02-2600-612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7월 20일						
주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성별영향평가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내용	더욱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기획예산과)	미치는 영향이 없음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임관)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8월 0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기획예산과장 귀하

붙임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법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 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되어야 한다.
 -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 · 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 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 · 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 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